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490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신성범의원안, 이해민의원안)	2

I. 개요

1.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49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4. 22.
- (3) 회 부 일 : 2026. 4.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종료될 경우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정부 및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출연금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과세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신성범의원안, 이해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 대상: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내국인 ○ 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취득 시 익금산입 ○ 적용기한: <u>2026.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과세특례: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9. 12. 31.</u> (신성범의원안) <u>2031. 12. 31.</u> (이해민의원안) ○ 시행일: 2027. 1. 1.(신성범의원안, 이해민의원안)

* 신성범의원안 2026. 4. 22. 발의(의안번호 18490), 이해민의원안 2026. 5. 11. 발의(의안번호 18908),

☐ 개정안은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내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0조의2는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내국인이 출연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하였을 때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출연금 수령에 따른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임.

동 특례는 2006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2007년부터 시행된 이후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으며, 2026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당초 연구개발 관련 특례 대상 출연금을 특정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¹⁾으로 열거하였으나,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확대하였음.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7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도 신설(2006년 12월 30일) ·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 · 연구개발 출연금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
2010	· 일몰기한 연장(2009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
2011	· 근거법률을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출연금’을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변경
2013	· 일몰기한 연장(2012년 12월 31일 → 2015년 12월 31일)
2015	· 일몰기한 연장(2015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
2018	· 일몰기한 연장(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2021	· 일몰기한 연장(2021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2023	· 일몰기한 연장(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2024	· 과세특례 대상 출연금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으로 확대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5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및 제11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동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20억원에서 2021년 3억원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	15	8	9	9	6	7	4	3	4	4	3	3	3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등을 해당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정부 등이 출연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출연금을 수령한 당해연도에 전액 사용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사용되므로 해당 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해당 연도에 수령하였으나 지출하지 않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신성범의원안은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이해민의원안은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